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18. 민형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10.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1.1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5.11.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형배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압표 매매가 성행합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만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입장권 부정판매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판매된 입장권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제3항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략)</p> <p>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lt;신설&gt;</p> | <p>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입장권등을-----.</p> <p>③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

## 다. 검토의견

○ 「경범죄 처벌법」 1)에 따르면 현상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근거 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
| 법<br>제3조제2항제4호<br>(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원 |

암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 3. 26.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법률 제20413호, 2024. 9. 27. 시행)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2)</sup>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고, 부정판매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정판매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개정 내용 ]

|                | 현 행 법                                     | 개 정 안                                            |
|----------------|-------------------------------------------|--------------------------------------------------|
| 금지<br>행위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br>입장권등의 부정판매<br>(제6조의2제2항) | 방법 무관<br>입장권등의 부정판매<br>(제6조의2제2항)                |
| 하위<br>법령<br>위임 | -                                         |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br>문체부령에 위임<br>(제6조의2제3항) |

-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도 제재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철도사업법」 등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부정판매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 암표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

| 법률          | 금지행위                                                                          | 처벌규정                                      |
|-------------|-------------------------------------------------------------------------------|-------------------------------------------|
| 경범죄<br>처벌법  | 경기장 등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br>타인에게 재 판매<br>(제3조제2항제4호)                             | 16만원 이하 벌금<br>(제3조제2항제4호)                 |
| 철도<br>사업법   |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br>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br>(제10조의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br>(제51조제1항제4호)               |
| 평창<br>올림픽법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br>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br>(제25조의2)                | 500만원 이하 과태료<br>(제92조제1항)                 |
| 공연법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br>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br>(제4조의2제2항)  | 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br>(제41조제1호)      |
| 체육<br>시설법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상습·영업으로<br>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br>(제21조의2제2항) | 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br>(제38조제2항제1호의2) |
| 국민체육<br>진흥법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br>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br>(제6조의2제2항)  | 1년 이하 징역/<br>1천만원 이하 벌금<br>(제49조의2제1호)    |

- 다만,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자 처벌규정 시행  
(2024. 9. 27.)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문체부는 안 제6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현장 암표매매를 「경범죄  
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암표매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정하고, 안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암표 확인 방법·  
절차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향후 기술의 변화에 따라 더욱

변화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sup>3)</sup>

-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다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3) (문체부 수정안)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 등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기타 사항

없 음.